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어촌공익기능증진을
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적용받는 양식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양식장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각각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 ----- ----- ----- ----- ----- ----- ----- ----- ---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 ----- ----- 가. ----- ----- ----- ----- ----- 것

나. (생 략)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 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 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을 준수할 것(「양식산 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생 략) 3.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 ----- -- 가. ----- ----- ----- ----- 것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44) 200 - 5631